



차별금지법에 따른 학교 내 차별 및 괴롭힘 보호 제도에 대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

- 1 뉴저지 차별금지법(LAD)은 실제 존재하거나 인지가능한 인종, 종교, 국가 출신, 성별, 성적 지향, 장애, 성 정체성 또는 표현, 기타 보호가 필요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학교를 비롯한 직장, 주거 지역 및 공공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 및 편견에 기반한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. 즉, 누구나 적대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학생이나 학교 직원들로부터 편견에 기반한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.
- 2 학교 측에서 이러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었어야 한다면 이를 멈추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한 학생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우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선생님이나 기타 학교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을 경우, 학교 측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3 차별금지법은 또한 학교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학교 지원 행사 및 활동에도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학생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 경기에 참여 시 팀원이나 상대 팀 또는 팬들로부터 인종적 또는 종교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4 차별금지법은 또한 인종, 종교, 성별, 성적 지향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한 특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. 이는 특히 정학, 퇴학을 포함한 학교 규율 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적용됩니다.
- 5 학교는 또한 한 사람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편견에 기반한 괴롭힘 또는 차별을 보고했다든지, 차별금지법에 따라 이러한 권리나 기타 권리를 시행 또는 시행하려 시도했다든지, 그러한 권리를 시행하기 위해 제3자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

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고발 사항이 있으신 경우 NJCivilRights.gov 페이지 방문 또는 973-648-270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.



뉴저지 법무장관집무처(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)

NJCivilRights.gov

DIVISION ON
CIVIL RIGHTS